

2026학년도 상반기 「글로벌 Insight & Innovation(몽골)」 항공권·여행자보험 구매 용역 과업지시서

I. 글로벌 Insight & Innovation(몽골) 프로그램 개요

- 사업명: 2026학년도 상반기 「글로벌 Insight & Innovation(몽골)」 항공권·여행자보험 구매 용역
- 인 원: 총 44명 (해외여행자보험 가입 기준)
 - ※ 과업 항목별 산출 기준이 상이함 : 항공권은 편도 발권 기준 총 64회차, 여행자보험은 참가자 44명, 행사 식대는 1회당 60명 기준
 - ※ 학교 및 개인사정에 따라 전체 참가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1인당 경비 산출 내역을 따름
- 계약 기간: 2026. 8. 9.(일) ~ 2026. 8. 23.(일)
 - ※ 프로그램 운영 일정 및 현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 - ※ 발권 대상 항공권의 탑승 일정은 참가자별 출입국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있음
- 여행 장소: 몽골 울란바타르
- 계약 금액: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따름(부가세 포함)
- 계약 방법: 수의계약

II. 과업내용

항 목		세부내역	비 고
항공료	국제선	한국 → 울란바타르 / 울란바타르 → 한국	TAX·유류할증 료 포함
	정기 항공사, 이코노미석(일반석)	편도 기준 총 64회차 발권	출·도착 공항 상이
여행자보험	몽골	참가자 전원 44명	전 일정 담보
행사 식대	몽골	60명 × 4회(8. 13. 및 8. 21. 각 중식·석식)	1인 1식 20,000원

- * 포함사항: 국제선 왕복·편도 항공권, 항공료, 유류할증료, Tax, 공항이용료, 발권 대행 수수료, 해외여행자보험(44명), 행사 식대(4회)
- * 불포함사항: 현지 숙박비, 현지 차량, 현지 가이드 등 지상비 일체, 관광지 입장료, 개인 경비 일체

1. 항공권 및 출입국 세부내역

구 분	대 상	구 간	탑승 예정일	인원	편도 회차
단체 출국	학생 · 교직원	한국 → 울란바타르	2026. 8. 9.(일)	28명	28
단체 귀국	학생 · 교직원	울란바타르 → 한국	2026. 8. 22.(토)	26명	26
개별 왕복	개별 일정 참가자	한국 ↔ 울란바타르	2026년 8월 중	2명	4
개별 귀국	몽골 현지 참가자	울란바타르 → 한국	2026. 8. 28.(금)	3명	3
개별 귀국	인솔 직원	울란바타르 → 한국	2026년 8월 중	2명	2
개별 귀국	인솔 교원(후발 합류)	울란바타르 → 한국	2026년 8월 중	1명	1
합 계 (발권 수수료 산정 기준)					64회차

※ 참가자별 출입국 일정이 상이하므로 개인별 세부 발권 내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

※ 상기 발권 건수는 편도 기준 총 64회차이며, 여행자보험(44명) · 행사 식대(1회당 60명)와는 산출 기준이 상이함

※ 몽골 현지 참가자 귀국편(2026. 8. 28.)은 계약기간 종료 이후 일정이나 본 과업의 발권 대상에 포함함

※ 출발 · 도착 공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되, 건적은 청주국제공항 출발 및 인천국제공항 도착을 기준으로 산정함

※ 편도 회차는 발권 건수 기준이며(왕복 1인 = 2회차), 상기 합계 64회차가 발권 수수료 산정의 기준임

※ 인솔 교원 1명은 프로그램 기간 중 별도 일정으로 후발 합류하며, 해당 인원의 한국 → 울란바타르 출국편은 본 과업의 발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귀국편만 포함함(출국 · 귀국 회차가 상이한 사유)

가. 항공권 조건

- 1) 항공권 구매 시 공항이용료, TAX, 유류할증료, 취급 수수료, 단체 위탁수하물 운송 비용 등 기타 모든 부가금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2) 모든 좌석은 이코노미석(일반석)으로 한다.
- 3) 항공사는 한국-몽골 노선을 운항하는 정기 항공사(스케줄 캐리어)를 이용하며, 세부 항공사 및 편명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.
- 4) 감염병 확산 등 현지 상황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여,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한 조건의 항공권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.
- 5) 항공예약확인서(PNR 포함)를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계약 체결 이후 발권되는 건은 각 항공편 출발 전까지 제출한다.
- 6) 출국 및 귀국 공항에서의 출입국 수속 등 제반업무를 지원한다.
- 7) 항공권 발권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.
- 8) 순천향대학교의 사정 및 몽골 현지 사정에 의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정할 수

있다.

- 9) 참가 인원은 총 44명 예정이며 출발 전 포기자나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경비 처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021호에 따라 처리하되, 상호 협상하여 조정한다. 단, 효력은 구두로 통보한 시점부터 발생하며, 추후 문서로 대신한다.
- 10) 계약상대자는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종합여행업 등록업체여야 한다.
- 11) 출발 공항과 도착 공항이 상이할 수 있고 참가자별 출입국 일정이 상이하므로, 계약상대자는 개인별 발권 내역을 관리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12) 발권 대상 항공권의 탑승 일정은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있으며(몽골 현지 참가자 귀국편 2026. 8. 28.(금) 등), 이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항공권의 발권·변경·환불 등 제반 업무를 계약기간 종료 이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.

나. 출국 및 귀국

- 1) 항공 출입국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.
- 2) 단체 출국 인원은 한국 시각으로 2026년 8월 9일(일) 국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몽골 울란바타르에 도착하여야 한다.
단, 항공기 여석에 따라 상의하여 변동 가능하다.
- 3) 단체 귀국 인원은 현지 시각으로 2026년 8월 22일(토) 몽골 울란바타르 공항을 출발하여 한국 시각으로 2026년 8월 23일(일) 국내 국제공항에 도착하여야 한다.
단, 항공기 여석에 따라 상의하여 변동 가능하다.
- 4) 교원·직원 및 몽골 현지 참가자의 항공 일정은 프로그램 운영 일정 및 항공사 예약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한다.

2. 여행자보험

- 가. 계약상대자는 참가자 전원(44명)에 대하여 전 일정을 담보하는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이때 44명은 항공권 발권 대상 인원과 몽골 현지 합류 인원을 포함한 프로그램 참가자 전원 기준으로 한다.
- 나. 보험 가입 내역(피보험자 명단, 보장 기간, 보장 항목)을 출발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다. 보험료는 1인당 30,000원을 기준으로 견적에 반영한다.

3. 행사 식대

- 가.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중식 및 석식을 2026. 8. 13.(목) 및 2026. 8. 21.(금) 각 중식·석식 총 4회, 1회당 60명 기준으로 제공하여야 하며, 식대 기준은 1인 1식당

20,000원으로 한다.

- 나. 세부 일정 및 인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,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고, 식대 비용은 견적에 반영하여야 한다.

4. 기타 이행조건

- 가. 항공권 예약 및 발권
- 나. 인보이스(송장) 발행
- 다. 항공수속(티케팅, 보딩 패스 등) 대행
- 라. 발권 대행 수수료는 발권 1건(편도 기준)당 30,000원으로 하며, 총 64회차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
- 마. 상기 내용 이외에 순천향대학교에서 항공권 구매 및 출입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필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 및 협조한다.
- 바. 순천향대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사. 해당국의 정치·외교 분쟁, 테러,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현지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지진 등 천재지변 발생으로 도저히 글로컬 Insight & Innovation(몽골)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양 기관 간 협의에 의해 본 프로그램을 전면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아. 현지 숙박, 현지 차량, 현지 가이드 등 지상비 일체는 본 과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5. 비밀 및 보안

- 가. 본 과업을 진행하면서 전체 또는 일부를 과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나.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획득한 글로컬 Insight & Innovation(몽골)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“갑”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다. 과업수행 종료 후 관련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고, “갑”에게 반납하여야 하며, 계약상대자가 은닉 또는 타에 유출해서도 아니 된다.

6. 계약의 해지 및 채권양도 금지

- 가. 순천향대학교는 계약상대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.
 - 순천향대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글로컬 Insight & Innovation(몽골) 프로그램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
 - 계약상대방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 했거나 태만하여 순천향대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
- 나. 계약상대방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을 할 수 없다.

7. 계약조건의 해석

가.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여행 도중이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.

나.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「용역 계약서」에 따르며,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“갑” 과 “을” 이 협의하여 정한다.